

# 선거 관리 규정

2004.12.20 제2회 정기총회 제정

2015.05.27 제5회 이사회 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플랜트학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14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회장, 감사 및 대의원을 공정히 선출함으로써 본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임기개시)** ①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부터 개시한다.

② 재선거 또는 보선에 의한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3조 (선거권)**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.

**제4조 (피선거권)** ① 대의원은 본회의 정회원을 2년 이상 유지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.

② 감사는 본회의 정회원을 5년 이상 유지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회장은 본회의 대의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고, 정회원을 5년 이상 유지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.

**제5조 (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.

1. 정권 또는 제명된 자
2. 2년 이상의 회비를 체납한 자
3. 해외거주 또는 장기체류자

## 제2장 선거관리

**제6조 (선거관리)**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회장, 감사 및 대의원에 대한 모든 선거를 관장하며 투표에 관한 절차, 서식, 이의 해석, 대의원 후보자(이하 후보자라 한다) 등을 결정한다. 다만, 본회 및 지회 대의원의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**제7조 (선거관리위원회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되 반드시 감사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.

②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대의원을 2회 이상 역임한 자
2. 이사 또는 감사를 역임한 자

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.

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즉시 해산한다.

**제8조 (명부작성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의 직선대의 원 선거일 이전 50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고, 이사회에 제출하여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대의원정수를 승인받아야 한다.

② 선거인명부는 가나다순으로 작성한다.

③ 선거인명부에는 주소, 성명, 직장을 기록한다.

**제9조 (직접선거 입후보의 기회균등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에게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도록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의원 입후보의 안내서와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식 등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직접선거 후보자 등록)** 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.

② 후보자등록서에는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학력, 경력, 공적사항, 기타 인적 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.

③ 후보자 등록서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2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후보자의 등록서는 선거일 30일 전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오후 6시 이후에 도착된 것은 무효로 한다.

⑤ 후보자 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추천장이 첨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.

**제11조 (직접선거 후보자명부작성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마감과 동시에 후보자등록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명부작성은 가나다순으로 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

③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대의원 정수에 미달되는 경우 등록된 후보는 무투표 당선된다.

**제12조 (직접선거 선거방법)** ① 선거는 후보자의 성명 왼쪽의 기표란에 ○표로 표시한다.

② 기표는 대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, 3분의 2 이하로 한다.

③ 투표는 소정의 투표용지와 봉투를 사용하고 반드시 우송하여야 한다.

④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투표용 봉투의 이면에 투표인의 우편번호, 주소, 성명을 표시하는 이외에는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.

**제14조 (선거일)**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각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.

**제15조 (투표용지)** ① 투표용지의 표면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을 하고 이면에는 1, 2, 3의 연번하단에 기표란과 후보자의 성명,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다.

② 투표용지에 표시된 후보자의 일련번호는 반드시 후보자명부의 일련번호와 같아야 한다.

③ 투표용봉투의 표면에는 우편번호, 본회 주소 및 사단법인 한국플랜트학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, 기타 선거관계 표식을 할 수 있으며 이면에는 투표인의 우편번호, 주소, 성명을 기입할 수 있도록 인쇄하고 반드시 반송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16조 (투표용지의 발송 및 접수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에게 선거일 20일 전에 투표용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일과 대의원 정수가 명시된 투표요령서, 기타 선거용 보조자료 등을 동봉하여야 한다.

③ 우송된 투표용지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도착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.

④ 접수된 투표용지는 개표 시까지 일정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17조 (투표용지의 무효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.

1. 투표용봉투에 일부인이 없는 것
2. 개표전에 봉투를 개봉한 것
3. 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것
4. 봉투이면에 투표인의 성명이 없거나 봉합이 안 된 것
5. 투표용지가 2매 이상 들어 있거나 대의원 정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기표된 것

## 6. 접수마감 이후에 도착한 것

### 제3장 개표

**제18조 (개표관리)** ①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개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한 개표 사무종사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.

**제19조 (투표함 열기)** ① 투표함을 열 때에는 위원장이 출석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사무종사원에게 개표요령을 설명한 후 열어야 한다.

② 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의 등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20조 (개표록작성 및 보관)**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순위별로 개표록을 작성하고 투표인명부와 함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개표록에는 위원장과 출석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개표록, 투표인명부, 투표봉투, 투표용지,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그 당선인의 임기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당선인

**제21조 (직접선거 대의원의 당선인 결정)**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득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대의원 정수의 5분의 4에 이르는 자까지를 대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최종 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

② 대의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서를 발송한다.

**제22조 (추대대의원 당선인 결정)** ① 대의원 추대위원회는 직접선거 대의원의 당선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추대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.

② 대의원 추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3조 (재선거)** ① 선거무효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시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24조 (보궐선거)** 대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. 다만, 궐원된 대의원 수가 재적 대의원수의 5분의 1 이내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 제5장 회장 및 감사선출

**제25조 (임원선출)** ①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총회에서는 최연장 대의원이 임시의장이 되어 선거를 진행한다.

**제26조 (회장 입후보 등록 및 선출방법)** ① 회장에 입후보할 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직선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.

②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 운영방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③ 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, 직선·추대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

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다만,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,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.

④ 1차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. 다만,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⑤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